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07

발의연월일: 2021. 2. 19.

발 의 자:이종성・박성중・정점식

이종배 · 김승수 · 김태호

박대수 · 정운천 · 성일종

서일준 • 윤두현 • 박형수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 리고 있음.

그러나,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, 근로 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#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전단 중 "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건강보험 공단"이라 한다)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를 "제3항에 따라"로 한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건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이 연 2회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납사실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17조(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     | 제17조(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 |
| 산) ①·② (생 략)           | 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    |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단(이하 "건강보험공단"이라 한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이 연 2회 이상 보건복지부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  |
|                        | 을 통지하여야 한다.       |
| ③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       | <u>④</u> 제3항에 따라  |
|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하 "건강보험공단"이라 한다)이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<u>따라</u>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|                   |
|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된 체납월(滯納月)의 다음 달부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입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그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| 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공단에 낼 수 있다.     |                |
| <u>④</u> (생 략)  |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 |